

**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
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 공고**  
〈공무원근로자(연구원 라급) · 기간제근로자(연구원 가급)〉

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공무원근로자(연구원 가급) 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1일

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

□ **최종합격자 명단**

직종	채용분야	응시번호	휴대전화 뒷자리 번호
공무직	연구원 라급 (고고학)	라급-02	7222
기간제	연구원 가급 (고고학)	가급-03	5302

□ **임용일**

○ 임용일: 2024. 2. 26.(월)

\*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
□ **최종합격자 제출서류**

○ 제출기간 및 방법: 2024. 2. 23.(금) , 우편접수

- 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, 국립고궁박물관 별관

○ 제출서류 목록

- ① 주민등록등·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)
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(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확인서)
- ③ 결격사유 확인서 1부([붙임 1] 참조)
- ④ 공정채용 확인서 1부([붙임 2] 참조)
- 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[붙임 3] 참조)

- ⑥ 반명함 사진(3x4) 이미지 파일(jpg)
- ⑦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⑧ 기타 서류(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장애인·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등)

## □ 공지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,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의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채용담당자(02-739-692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
2.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
3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. 끝.





##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# 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<u>공직자</u>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</p> <p>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'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/p> <p>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p> <p>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생년월일    .    .    .

지 원 자

(서명)